##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혜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37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0.

발 의 자:백혜련・이병진・이수진

문진석 • 이건태 • 서영석

이재정 • 이용우 • 김준혁

김기표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대한민국 헌법」제77조제3항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만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고, 국회 권한에 관하여서는 조치 할 수 없음. 그러나 현행 「계엄법」에는 계엄 시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재하고, 계엄사령관이 국회 기능 및 국회의원 활동을 방해하여계엄 해제 방해 등의 우려가 있음. 실제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선포 이후 계엄사령관 등은 계엄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출입을 막는 등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음.

이에 계엄 시에도 국회 활동은 방해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, 계엄사 령관은 국회 활동과 국회의원을 보호한다고 규정하여 헌법에서 보장 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고자 함(안 제2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##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 제한 금지) 계엄 시에도 국회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으며, 계엄사령관은 국회 기능을 수호하고 국회의원의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&lt;신 설&gt;</u>	제2조의2(국회의 권한 및 기능의
	제한 금지) 계엄 시에도 국회
	의 기능과 국회의원의 활동을
	방해할 수 없으며, 계엄사령관
	은 국회 기능을 수호하고 국회
	의원의 활동을 보호하여야 한
	<u>다.</u>